

예산총칙

2023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48,814,830	16,464,445
일반회계	474,135,202	14,224,056
특별회계	74,679,628	2,240,389
공기업특별회계	3,444,143	103,324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3,444,143	103,324
기타특별회계	71,235,485	2,137,06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2,495,848	374,87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11,385	21,342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35,444,783	1,063,343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861,387	115,842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348,910	100,467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151,500	4,545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0,666,560	319,997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270,000	8,100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162,912	124,887
의령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2,200	3,66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략"

제 4 조 "생략"

제 5 조 "생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같은 부서에서 같은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